

#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5.

발의자 : 김미애 · 최보윤 · 송석준  
이만희 · 안철수 · 김기현  
강승규 · 이종배 · 김종양  
나경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 · 시행을 위하여 산업별 · 직업별 · 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 ·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불완전 취업, 부분실업 등 실업과 취업,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저활용 보완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수립 · 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 · 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 · 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함(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

$\equiv_{\circ}$ ).

##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·계층별 노동  
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

제17조제1항 중 “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공표하여 국민들  
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”를 “인력수요, 인력수급 동향·전망  
및 실업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공표하되,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  
장과 협의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 
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·공표할 때에 다양  
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2.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·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</u></p>
<p>6. ~ 11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제17조(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·보급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산업별·직업별·지역별 고용구조 및 <u>인력수요</u>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6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·보급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력수요, 인력수급 동향·전망 및 실업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공표하되,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</p>

<p><u>따라 통계를 작성 · 공표할 때</u> <u>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</u> <u>준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
---